

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- 2019년도 -

○ 건강보험료율

년 도	보 험 료 율
2017	보수월액 × 6.12%
2018	보수월액 × 6.24%
2019	보수월액 × 6.46%

-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(2007.1.1)로 보험료 산정 보수기준이 종전 “표준보수월액”에서 ⇒ “보수월액”으로 변경됨.
- 2019년도 가입자부담 3.23(50)%, 사용자부담 3.23(50)%씩 각각 부담
- 노인장기요양보험 : 건강보험료의 8.51%(사용자 8.51%,근로자 8.51%씩 각각 부담)

○ 국민연금료율

년 도	보 험 료 율
2017	표준소득월액의 9%
2018	표준소득월액의 9%
2019	표준소득월액의 9%

- 2019년도 가입자부담 4.5(50)%, 사용자부담 4.5(50)%씩 각각 부담

○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

사 업 별	보 험 료 율	산 정 기 준
실업급여 (공동 부담)	13/1,000(1.3%)	사용자 부담 6.5/1,000(0.65%) 근로자 부담 6.5/1,000(0.65%)
고용안정사업 · 직업능력 개발사업 (사용자 부담)	2.5/1,000(0.25%)	상시근로자 150인 미만
	4.5/1,000(0.45%)	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
	6.5/1,000(0.65%)	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
	8.5/1,000(0.85%)	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

- 실업급여요율, 고용안정, 직업능력 전년대 동일

○ 산재보험료율(천분율)

년 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종류					
일반건설공사(갑)	38	38	39	40.5	37.5
일반건설공사(을)					
중건설공사					
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					
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의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.

○ 노무비용(백분율)

년 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종류					
일반건설공사(갑)	27 (31)	27 (31)	27 (30)	27 (30)	27 (30)
일반건설공사(을)					
중건설공사					
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					

- ()안은 하도급 노무비용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공사의 개산 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용을 고시함.

○ 건설업 월평균임금

년도	건설업 월평균보수
2015	3,157,765원
2016	3,408,840원
2017	3,588,357원
2018	3,619,987원
2019	3,906,885원
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.

○ 최저임금 및 기준임금

년도	최저임금			건설업 기준임금	
	시간급	일 급	월 급	시간급	월 급
2016	6,030	48,240	1,260,270	16,310	3,408,840
2017	6,470	51,760	1,352,230	17,170	3,588,357
2018	7,530	60,240	1,573,770	17,320	3,619,987
2019	8,350	66,800	1,745,150	18,693	3,906,885

- 최저임금은 2019.1.1 ~ 2019.12.31까지 적용
-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(2011.7.1부터 5인 이상 의무적용)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고시함.

○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

년도	사업주 범위(이상)	고용부담기초액 (1인당/월)
2015	69억 0천 9백만원	710천원
2016	75억 7천 5백만원	757천원
2017	75억 7천 5백만원	812천원
2018	75억 7천 5백만원	945천원
2019	86억 8천 1백만원	1,048천원

- 총공사실적 기준, 2019년 의무고용률 3.1%임.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.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.

○ 임금채권보장기금,석면피해분담금사업주부담금 비율

년도	임채부담금비율(%)	석면부담금비율(%)	비 고
2015	0.8/1,000	0.04/1,000	
2016	0.6/1,000	0.04/1,000	
2017	0.6/1,000	0.03/1,000	
2018	0.6/1,000	0.03/1,000	
2019	0.6/1,000	0.03/1,000	

-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,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 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.(2011년부터 보수총액기준)
- 석면피해구제분담금(2011년 신설),2010.12월부터 경감비율 감소(25%)